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 번호	18512
----------	-------

제안연월일 : 2026. 4. .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07414	송기헌의원	2025.1.10.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4.28.)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2208239	강명구의원	2025.2.18.	
2209236	김승원의원	2025.3.21.	
2210207	이정문의원	2025.4.2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8.26.)
2210356	권향엽의원	2025.5.2.	
2210447	박덕흠의원	2025.5.9.	
2210741	이상희의원	2025.6.12.	
2210816	윤한홍의원	2025.6.13.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11282	윤준병의원	2025.7.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5.11.24.)
2211654	서영교의원	2025.7.23.	
2214393	이인영의원	2025.11.1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6.3.31.)
2214818	이헌승의원	2025.12.3.	
2214938	전현희의원	2025.12.5.	

가.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4.1.)에서 위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6.4.2.)는 위 1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발생하게 한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에 대하여 헌법불합

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위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제42조제7항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전단 중 “나이가 많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법률 제2136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제3호 전단 및 제4호 전단 중 “75세”를 각각 “65세”로 한다.

제68조의4 및 제6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8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

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7조제1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제68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8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제7항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3조제2항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제2조(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받는 진

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등의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진료,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을 받고 있던 사람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 등을 받는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p> <p>1. · 2. (생략)</p> <p>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u>나이가 많은</u>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신 설></u></p> <p>③ · ④ (생략)</p>	<p>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u>----- ----- ----- ----- ----- -----.</p> <p>4. <u>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법률 제2136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42조(진료)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
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2. (생략)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
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
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
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
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4. 제16조의3제1항의 6·25전몰
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

법률 제2136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42조(진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1. 2. (현행과 같음)

3. -----
-----65
세-----

4. -----

람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생략)

<신설>

-----65세-----

-----.

-----.

⑧ (현행과 같음)

제68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

<신 설>

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 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11의2. (생략)

<신설>

12. ~ 14. (생략)

② ~ ④ (생략)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② ~ ④ (생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11의3. 제68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12.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5조(벌칙) ①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6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